

Vol. 6

2026.6.12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2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 통합 운영사업부 안만복부대표 mbahn@hjcustoms.co.kr

통관 요건 물류사업부 박주경부대표 jpark@hjcustoms.co.kr

통관 통합 운영사업부 오소영전임 syoh1@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예고

III. 품목분류 변경고시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 20 조제 4 항 문구 확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 4 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변경 ➔ 제 4 호 신설에 따라, 운임의 개념에 보험료 포함 범위를 명확화 함
제 20 조제 4 항 제 4 호 신설	-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통상적인 운송경로·운송일정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통상적 운임’ 적용 가능 근거 마련

(3) 시행일

2026.5.8

I. 법령 개정사항

2.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 4411 호*의 태국산 섬유판 (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① 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②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일 것. * HSK 상세 <table border="1"> <tr> <td>제 4411.12-1000 호</td><td>제 4411.93-1000 호</td></tr> <tr> <td>제 4411.12-9000 호</td><td>제 4411.93-9010 호</td></tr> <tr> <td>제 4411.92-1000 호</td><td>제 4411.93-9090 호</td></tr> <tr> <td>제 4411.92-9010 호</td><td>제 4411.94-1000 호</td></tr> <tr> <td>제 4411.92-9090 호</td><td>제 4411.94-9000 호</td></tr> </table>	제 4411.12-1000 호	제 4411.93-1000 호	제 4411.12-9000 호	제 4411.93-9010 호	제 4411.92-1000 호	제 4411.93-9090 호	제 4411.92-9010 호	제 4411.94-1000 호	제 4411.92-9090 호	제 4411.94-9000 호
제 4411.12-1000 호	제 4411.93-1000 호										
제 4411.12-9000 호	제 4411.93-9010 호										
제 4411.92-1000 호	제 4411.93-9090 호										
제 4411.92-9010 호	제 4411.94-1000 호										
제 4411.92-9090 호	제 4411.94-9000 호										
공급국	태국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table border="1"> <tr> <th>공급자</th><th>덤핑방지 관세율(%)</th></tr> <tr> <td>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td><td>20.24</td></tr> <tr> <td>2. 어드밴스(Advance Fiber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td><td>15.29</td></tr> <tr> <td>3. 그 밖의 공급자</td><td>22.44</td></tr> </table>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24	2. 어드밴스(Advance Fiber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29	3. 그 밖의 공급자	22.44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24										
2. 어드밴스(Advance Fiber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29										
3. 그 밖의 공급자	22.44										

(3) 시행일

2026.5.7

I. 법령 개정사항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제정 이유

목재생산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종전에는 매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주기를 줄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보고서 제출 (제 30 조)	○ (기존)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변경)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3) 시행일

2026.5.6

I. 법령 개정사항

4.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시행

(1) 시행 이유

중동상황으로 국제 운임이 폭등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 이용 시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임특례 적용을 위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소비 물가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업체	○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여 해당 수입물품(HS 4 단위)을 수입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25.3월~'26.2월 내)
적용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 ② 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되어 있던 선박 ③ 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
적용 범위 및 적용 물품	○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 비용 ○ 적용 물품 제한 없음
적출국	○ 중동지역 이하 20 개국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적용 방법	○ 수입신고 시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 추후 확정가격 신고 시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신고 ○ 잠정가격신고 사유 ① 운임/운송관련비용/보험료 중 해당 사항 선택 ② '기타' 선택 후 사유에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 기재 ○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후 경정청구 실시 ※ 경정 시, 정정 사유(99) "기타(중동 상황으로 인한 운임 특례 적용)" 기재 필요

구분	내용
제출 서류	○ 대상확인: 기존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내역(수입신고번호 등) ○ 실제운임: 실제 지급한 운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 ○ 통상운임: 지원 항목별 계산 내역 ○ 운송증빙: 적용 기준 해당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특례 효력	○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중동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적용 종료 시한 별도 공지 예정

(3) 시행일

2026.5.8

I. 법령 개정사항

5.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1) 개정 배경

담배 관련 세금 부과 대상을 합성니코틴까지 확대(‘26.4.24.)하고, 니코틴 유사물질 출현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24.1월)」을 폐지하고 개정 지침을 시행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table><tr><th>구분</th><th>성분란 기재요령</th></tr><tr><td>천연·합성니코틴*</td><td>○ 신고서 항목 ㉔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예시: Nicotine 2%)</td></tr><tr><td>유사·무니코틴(신설)**</td><td>○ 신고서 항목 ㉔ ‘성분’란에 성분 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등)</td></tr></table>	구분	성분란 기재요령	천연·합성니코틴*	○ 신고서 항목 ㉔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예시: Nicotine 2%)	유사·무니코틴(신설)**	○ 신고서 항목 ㉔ ‘성분’란에 성분 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등)
	구분	성분란 기재요령					
	천연·합성니코틴*	○ 신고서 항목 ㉔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예시: Nicotine 2%)					
유사·무니코틴(신설)**	○ 신고서 항목 ㉔ ‘성분’란에 성분 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등)						
*천연·합성니코틴 HSK: 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유사·무니코틴 HSK: 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 (합성니코틴) 다음 6 종 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table><tr><td>①거래계약서 ②수출국 내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제조국 정부 발행 제조허가증 및 공장등록증 ④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⑤MSDS·성분명세서 등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td></tr></table> ※ 중국산은 ④번 서류 및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추가 확인 ○ (천연니코틴) MSDS 제출 → 니코틴 함량 확인 ○ (유사·무니코틴) MSDS 제출 → 성분 확인	①거래계약서 ②수출국 내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제조국 정부 발행 제조허가증 및 공장등록증 ④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⑤MSDS·성분명세서 등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①거래계약서 ②수출국 내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제조국 정부 발행 제조허가증 및 공장등록증 ④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⑤MSDS·성분명세서 등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구분	내용
니코틴 용액 수리 후 분석 절차 변경	○ 동일 모델·향료만 상이한 제품은 1 개만 수리 후 분석으로 변경 (종전: 수리 전 분석) ○ 단, 포장·성분·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 후 분석 필요

(2) 시행일자

2026.6.15

I. 법령 개정사항

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제정 이유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공개 방법·기간 및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제 12 조의 2)	○ 법 제 8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무상 반입 견본·광고물품(표시가 명확한 것) 및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낮다고 고시하는 위생용품은 수입신고 면제 가능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제 13 조의 2)	○ 법 제 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조건부 수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및 서류검사 대상 최초 수입물품을 제외한 위생용품에 대해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수리 가능
검사 결과 공개 (제 13 조)	○ 법 제 8 조제 6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 - 적합: 확인증 발급일부터 1 년간 - 부적합: 통보서 발급일부터 6 개월간 (부적합 내용 포함)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 26 조의 3·제 26 조의 4)	○ 법 제 28 조의 3 제 1 항~제 3 항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안전정보 DB 구축 및 정보체계 표준화 ○ 관계 기관에 자료·정보 제공 및 시스템 연계 요청 가능

(3) 시행일

2026.5.15

I. 법령 개정사항

7.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제정 이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32호, 2022. 9. 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 HSK 제 2909.43-0000 호에 해당하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공급국	사우디아라비아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1.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다우사우디(Dow Saudi Arabia Product Marketing B.V.) 나. 다우싱가포르[Dow Chemical Pacific (Singapore) Private Limited] 다. 한국다우케미칼(주)(Dow Chemical Korea Limited)	43.358
	2. 그 밖의 공급자	

(3) 시행일

2026.5.15

I. 법령 개정사항

8.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 HSK 제 8479.50.9000 호, 제 8515.21.1010 호, 제 8515.21.2010 호, 제 8515.21.3010 호, 제 8515.21.9010 호, 제 8515.31.1010 호 또는 제 8515.31.9010 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4 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구조(4 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 축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설치면과 1 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 축과 3 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말한다)일 것 나) 운반할 수 있는 중량이 6 킬로그램 이상 600 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제 1 호의 로봇에 1 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것
제외물품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고속로봇 가. 운반할 수 있는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1 축, 2 축 및 3 축이 아닌 축의 최고 회전속도의 평균이 초당 500 도를 초과할 것 다. 2 축과 3 축이 모두 양쪽 끝부분에서 지지되는 구조일 것 2. 방폭 기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도장전용로봇 3. 사람과 같은 작업영역에서 직접 협동하여 작동하는 로봇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10218-1 및 ISO/TS 15066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음을 인증받은 협동로봇

제외물품	4. 사람의 상반신과 양팔을 본뜬 형태로 7축 이상의 로봇 팔 2개가 하나의 본체(상반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에 부착되어 전체 회전축이 14축 이상인 양팔로봇 5. 화물의 적재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4축 산업용 로봇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화낙(Fanuc Corporation)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7.45
		2. 야스카와(Yaskawa Electric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64
		3. 그 밖의 공급자	18.08
	중국	4. 쿠카로보틱스(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96
		5. 에이비비(ABB Engineering Shanghai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85
		6. 가와사키(Kawasaki Heavy Industries,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72
		7. 그 밖의 공급자	17.77

(3) 시행일

2026.5.21

II. 입안예고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과 통관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요건 구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고와의 통일성 확보하고,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가, 개별법령 및 HSK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조정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 국내반입 차단	○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 칫솔, 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 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 개 신규 지정 ○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 바닥재 등 96 개 목재제품 신규 지정
산업안전·화재 관련 안전인증 미구비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	○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 강화 * 엑스선용 고압발생기(원자력안전법), 승차용 안전모(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2 개 품목 신규 지정 ○ 소량의 노출 또는 유출로도 인체·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30 종 신규 지정 * 에나멜 등 백연(White Lead)을 포함한 페인트 17 종(산업안전보건법), 일산화탄소, 포름산 등 13 종(화학물질관리법) 신규 지정

구분	내용
국내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관리 강화	○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 종 신규 지정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국내 밀반입 방지를 위해 파충류 육류·원피·가죽 3 개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 개 품목 신규 지정
다른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	○ 「화학물질관리법」 변경사항 반영 (“유독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 등)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으로 신규 지정하고 「의료기기법」 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분리
기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 HSK 2025 개정사항 반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기관 요청, 협의사항 반영,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 등 (수출) 5 개 법령 18 개 품목 추가, 86 개 변경, 180 개 제외 (수입) 29 개 법령 255 개 품목 추가, 304 개 변경, 522 개 제외

II. 입안예고

2.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하며,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 대상물품 HSK 제 7210.41.0000 호, 제 7210.49.9010 호, 제 7210.49.9090 호, 제 7210.61.0000 호, 제 7210.70.2000 호, 제 7212.30.9010 호, 제 7212.30.9090 호, 제 7212.40.2000 호, 제 7225.92.9091 호, 제 7225.92.9099 호, 제 7226.99.3000 호
공급국	중국

구분	내용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	예비 덤핑율(%)
	1.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및 그 관계사	22.34
	2.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26.28
	3. Winstone Development Ltd	33.67
	4. 그 밖의 공급자	25.75
부과기간	2026.6.12 ~ 2026.10.11 (4 개월)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Insulation Tape(플라스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INSULATOR PD BOARD, YTV3306N Accumulators Insulation Tape
물품 설명	-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절연 필름 등으로, 전기적 절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테이프·필름류 - ①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상의 절연 부품품(인슐레이터 보드) ②는 축전지(Accumulator) 내부 셀 간 절연용 플라스틱 테이프
HS CODE	- 변경 전: 제 8547.20-0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제 3926.90-9000 호 (WTO 세율 6.5%)
변경 사유	- 전기절연용 부품품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 3926.90-9000 호에 분류 (2026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6.5.1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2.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Wireless Charging & LED Clock ; BZ-T100WC
물품 설명	- 무선충전기(Qi 표준 고속충전 기술 탑재)와 LED 디지털 시계, LED 무드등 조명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기기로서, 소매포장 상태로 제시 -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 부가기능인 시계·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 기반 고속 충전기술이 적용
HS CODE	- 변경 전: 제 9105.11-0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제 8504.40-3010 호 (WTO 세율 0%)
변경 사유	-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으므로 배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제 8504.40-3010 호에 분류 (2026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6.5.14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호르무즈 해협 고립·우회 선박 대상 '수입 운임 특례' 지침 발표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우회 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 3월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국제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기업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우회항로를 이용하거나 항공편으로 긴급 수송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입 기업들은 높은 운임과 관세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물류비 폭등이 국내 소비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우회항로를 이용하거나 항공편으로 긴급 수송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입 기업들은 높은 운임과 관세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 수입물품을 들어온 업체를 대상으로,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 대신 이전 수준의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중동발 대체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물론, 긴급한 사유로 해상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전쟁 발발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립됐던 선박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운임 특례 적용 범위에는 일반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최근 전쟁 여파로 급등한 운송 보험료까지 포함된다.

수입 기업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실제 지급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뒤, 이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가격신고 시에는 지원 항목을 선택한 후 '기타'란에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해야 한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정 사유 코드(99)에 '기타(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라고 기재하면 된다.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실제운임 및 통상운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등 운임 포함 인도조건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가격과 운임,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를 구분해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운임 특례는 2026년 5월 8일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개정과 함께 시행되며,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향후 적용 종료 시점은 중동 정세 전개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DB 구축 공개

-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 가능... 매월 최신 사례 업데이트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을 맞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품명 검색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품목관세나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미국 자체의 원산지 기준이다. 이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까다로운 제도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종 생산해 수출하는 물품일지라도 제3국산으로 판정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청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수입해 국내에서 자체 양념을 개발하고 버무려 포장한 ‘오징어젓갈’의 경우, 한국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쳤음에도 주 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중국산’ 판정을 받았다.

미국의 수입세율 기준으로 한국산 오징어젓갈은 기본세율 0%에 임시수입추가관세 10%가 더해져 총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총 3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구축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데이터베이스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홈페이지 내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신 결정 사례를 반영해 매월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무역위,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최대 31.55% 반덤핑관세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 Polyvinyl Chloride Paste Resin)에 대해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새롭게 개시했다.

무역위는 5월 21일 열린 제473차 본회의에서 유럽 4개국산 PSR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하고,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관세율은 독일산에 30.60~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PSR은 염화비닐 모노머(VCM)를 중합해 만든 미세분말 형태의 수지(Resin)로, 벽지·바닥재 등 건축내장재와 소파·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등 산업소재에 폭넓게 사용된다. 품목분류는 HSK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며,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6.5%, 한·EU 및 한·EFTA FTA 협정세율은 0%다. 현재 해당 제품에는 지난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공급국	내용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독일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31.55%
	그 밖의 공급자	30.60%
프랑스	캠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31.55%
	그 밖의 공급자	31.55%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25.79%
	그 밖의 공급자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28.15%
	그 밖의 공급자	28.15%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조사대상은 철·탄소강·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을 압연·단조해 만든 봉강으로, 자동차·건설중장비·조선·베어링·산업기계 부품 등에 사용된다.

품목분류는 HSK 제7214.10-0000호, 제7214.30-0000호, 제7214.91-1000로 등 16개에 해당하며, 기본관세율은 8%지만 WTO 협정세율과 한·중 FTA 협정세율은 0%다. 무역위는 올해 9월 예비판정, 12월 공청회, 내년 2월 최종판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 기업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신청한 '커넥티드 전 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은 조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LTE 이동 통신용 무선설비 장치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해당 특허의 무효 심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판결 확정 시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무역위, 유럽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의결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5월 21일(목),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 Polyvinyl Chloride Paste Resin)에 대한 덤핑 조사건,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1.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무역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 ~ 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에 25.79%, 스웨덴산에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제품은 건축내장재(벽지, 바닥재), 생활용품(소파, 신발), 산업 소재(타포린, 장갑)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작년 12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재경부에서 지난 2월부터 25.79 ~ 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2.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중지 의결

한편, 국내기업(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이 신청('25.6.24.)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 결정하였다. 그간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자사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을 피신청인이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26.4.9.)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5.12.)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특허법원의 판결 확정 시까지 동 건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3. 중국산 봉강: 덤핑 여부 조사개시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그간 우리 업계로부터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받아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조사개시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날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무역위는 원안 접수하였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8월 12일 시행 EU 포장재 규정 PPWR

EU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을 도입하면서 포장재 규제 체계는 기존의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 형태로 기존 지침(PPWD)을 대체하면서 규제 통일성과 법적 구속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PPWR의 핵심 방향은 포장재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EU는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15%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도록 요구하며,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과대포장 방지, 유해물질 관리 등 포장 전반에 걸친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의무는 유해물질 규제와 문서화 의무다. 포장재 내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계 농도는 100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해 개별 25ppb, 합산 250ppb, 총 불소 50ppm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의도적 첨가뿐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도 규제 대상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EU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포장재는 적합성선언서(DoC)와 기술문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DoC는 포장재가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법적 선언이며, 기술문서는 재질, 구조, 시험결과, 재활용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 구성된다. 해당 문서 없이는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며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

기업은 우선 자사 제품에서 어떤 구성요소가 ‘포장재’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PPWR은 제품 보호·보관·운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품을 포장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동일 물품이라도 제공 방식에 따라 포장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포장 구성 요소별 데이터 확보가 요구된다. 판매포장뿐만 아니라 그룹포장, 운송포장까지 포함한 전체 포장 시스템 관점에서 관리해야 하며, 각 포장 구성품에 대한 재질, 중량, 구성 구조, 공급업체 정보, 시험성적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4대 중금속은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며, PFAS는 식품 접촉 포장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포장 구조, 설계 사양, 작동 원리, 재활용성, 시험 결과 등이 포함된다. 재사용 포장의 경우 반복 사용 가능성, 안전성, 내용물 배출 과정에서의 손상 여부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후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데, 일반 포장은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 보관 의무가 있다.

아울러 EU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기업은 생산자로서 회원국별 등록 의무(EPR 관련)가 발생한다. 해당 의무는 제조업체, 수입자, 유통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며, EU 외 기업도 예외가 없다.

향후 규제는 더 강화될 예정이다. 2030년부터는 모든 포장재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성 등급 평가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예: 70% 미만)에 해당하지 못하는 포장재는 시장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적용되고, 택배·운송 포장에서는 빈 공간 비율 제한과 과대포장 금지 규정이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는 복합재질 포장과 다층 필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어려운 구조는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소재는 사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 포장 설계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충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PPWR은 특정 산업에 국한된 규제가 아니라 식품, 화장품, 전자, 산업재 등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범용 규제다. 특히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포장 설계, 소재 선택, 공급망 관리,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단순히 규제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EU 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PPWR은 EU에만 적용되는 지역 규제를 넘어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과제로 평가된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중국 해관총서, 6월 1일부터 식품접촉제품도 수입 시 무작위 검사

중국의 관세청, 해관총서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검사 대상이 아닌 무작위 검사 실시 대상을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5월 8일 '2026년도 법정 검사 외 수출입 상품 추출검사 실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57호)'를 발표하고, 특정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해관총서 공고 제150호(2025년 법정 검사 외 수출입 물품 추출검사)'는 폐지된다.

해관총서의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고 제150호는 학생문구류·유아용품·전자제품·가전제품 등 수입품, 어린이 장난감·조명기구·저압 전기기구 등 수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수입품 검사 대상에는 유아용품, 식품접촉제품, 생활용품, 성인용 신발, 전자제품, 저압전기기기 등이 포함됐다. 수출품의 경우 유아용품과 저압전기기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수입품 검사 대상에 식품접촉제품이 포함되면서 식품 포장재·주방용품·용기류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는 안전·위생·환경보호와 관련된 품목이나 소비자 불만, 반품 사례가 많은 제품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통관·품질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지부에 따르면, 품질 사고 이력이 있거나 신규 기술 기준이 적용된 상품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수입·수출 상품별 샘플 추출 장소도 구체화됐다. 수입품은 양하항·도착지·수하인 또는 사용자 소재지에서 샘플을 채취하며, 수출품은 제조공장·물류허브·선적항 등에서 추출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기술 처리와 재검사를 거쳐야 하며, 재검사 후에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출 불허나 반송·폐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샘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7.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도입... 수출기업 환급 절차 간소화

관세청이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급 관련 증명서류를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줄고 환급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의 환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도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환급 관련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자율발급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으려면 지정신청서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지정요건 확인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 정산받는 개별환급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출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를 변경할 경우 2년의 제한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적용에서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적용에서 비적용으로 변경하는 제한기간은 삭제했다.

또한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이 어려운 기업은 일정 기간이나 1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 계산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은 관세조사를 간소화해 성실기업의 중복 조사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